

법령코너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9- 058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기준 등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세부 운용사항을 규정한「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기술표준원장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추가('08.12.31)년 '휴대용 리튬2차전지'에 대하여 외국
의 국제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시험성적서 수용 필요성 대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09.7.1)됨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에서 관리수준이 전환
된 품목의 공장심사기준 등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9.7.1) 내용 반영

○개정규칙 제16조제1항제2의 2호에서 품목검사대상에 국내제조업자를 포함함에 따라 개정 운용요령에
반영(제2조제3호)

- 품목검사의 정의에 외국제조업자 외에 국내제조업자도 포함

○개정규칙 제14조제3항에서 정기검사의 면제대상이 종전 '자체검사의 실적이 2년이상 연속하여 우수한
경우'에서 '자체검사의 최근 1년간 실적이 우수한 경우'로 변경됨에 따라 운용요령에 반영(붙임 1)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에 대한 외국소재 시험기관의 성적서 수용 절차 규정을 신설(제8조)

제8조 (휴대기기용리튬2차전지의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인증기관은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대기기용리튬 2차전지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규칙 동조동항제3호의 안전성검사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상호인정체제(ILAC-MRA)에 참여하는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
2. 제1호의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3.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의한 시험기관일 것

안전관리대상 품목조정 (09.7.1)에 맞추어 공장심사기준상의 안전인증 대상에서 관리수준이 전환된 품목의 심사내용 삭제(붙임 1)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으로 전환된 품목(9개 품목)

: 물휴지,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승차용안전모, 운동용안전모,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모터 달린보드

※ 붙임 1: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전문”[관보게재 시 생략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

3.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